

#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운영 내규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언어병리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.

**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**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·박사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## 제2장 입학관리

**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** 언어병리학과 소속 교수들은 언어병리학과 석·박사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## 제3장 교육과정 및 교·강사 배정

**제4조 (교육과정)** 언어병리학과의 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실습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4년제 일반대학에서 언어병리를 전공하지 않은 대학원생(이하 비전공자)은 30시간 이상 임상관찰 이수 후 임상실습을 수강할 수 있다.
- ② 전공자는 6개월 1개 학기 30시간, 비전공자는 12개월 2개 학기 90시간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한다.

**제5조 (과목개설)**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으로 요구되는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고려하여 개설 및 운영한다. <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57조의4, 별표6의2>

**제6조 (교·강사 배정)** 개설 과목의 교·강사는 박사학위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담당과목 분야에서 임상 및 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교·강사를 배정한다.

## 제4장 논문지도

제7조 (지도교수의 선정 및 변경) 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변경의 방법과 절차는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

## 제5장 자격시험

제8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 언어병리학과의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석사학위과정은 면제 조건이 없다.
- ② 박사학위과정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(교신저자, 제1저자일 경우에만) 논문게재 시 1편당 2과목 면제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(교신저자, 제1저자일 경우에만) 논문게재 시 1편당 1과목을 면제한다.

제9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을 시행하며, 합격점수는 80 점 이상으로 한다.

제10조 (외국어시험 과목)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영어 공인어학 성적이나 영어권 국가 해외 수학(연수) 경험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- ① 영어 공인어학성적 기준 점수: TOEFL(PBT530점 · CBT197점 · IBT71점 이상), TOEIC 750점 이상, TEPS 600점 이상,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, Opic IM2 이상

## 제6장 학위과정

제11조 (석사과정 학위취득방법 선택)

-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“학위논문”과 “연구논문” 중 학위취득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
- ② 2학기 말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학위취득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

제12조 (석사과정 학위취득방법 변경) 선택한 학위취득방법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.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의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**제13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**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대학원에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이전에 학과에서 실시하는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. 평가 결과는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한다.

**제14조 (예비발표)** 학위논문 심사 이전에 학과에서 실시하는 논문 예비발표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 평가 결과는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한다.

**제15조 (논문심사)**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외의 논문심사위원 선정과 논문심사 절차는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

### 제16조 (연구논문 심사절차)

- ① 연구논문 심사 평가방법 및 기준은 학과 주임교수 및 전임교수가 따로 정하며, 평가 결과는 “합격” 또는 “불합격”으로 한다.
- ② 연구논문은 학위논문에 준하는 심사로 진행한다.

**제17조 (연구논문 제출)** 연구논문 심사에서 통과된 학생은 제본한 연구논문과 표절검사결과보고서, 국문 논문 파일(한글)을 학과에 제출한다. 제본 시 겉표지는 소프트커버로 제작한다. 학과는 3년 동안 연구논문을 보관하고 이후 폐기할 수 있다.

##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

**제18조 (의사결정 방식)**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0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9조 (학위 취소)**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 또는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